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35
----------	------

제출년월일 : 2014. 4.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개정사유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14. 1. 14 공포, 2014. 1. 17 시행)됨에 따라 용·복합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일부 용도지역에 대한 건축 행위제한을 금지하는 건축물을 제외 하고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Negative)으로 전환하고, 한옥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완화 등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며,
- 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안전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규정 신설 등 현행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1,2종 전용주거지역내에서 바닥면적 1천㎡ 미만의 한옥으로 건축되는 체험관 입지 추가 허용 (안 제31조제2호 및 제32조제2호)
- 나. 용·복합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일부 용도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방식(Negative)으로 전환(안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3조, 제49조)
 - * 준주거, 상업(중심·일반·근린·유통), 준공업, 계획관리지역
- 다. 유통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건폐율 상향 조정(안 제64조 제1항)
- 라. 방화지구내 건폐율 완화대상 정비(안 제64조 제4항)
- 마. 한옥, 전통사찰, 지정·등록문화재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완화 (안 제64조 제6항)

- 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용적률 완화
(안 제64조 제11항, 안 제65조 제10항)
- 사.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중복위촉 제한 규정 신설(안 제68조 제6항)
- 아. 시도시계획위원회 안건의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횟수 규정 신설
(안 제71조 제4항)
- 자.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관한 사무를 군수·구청장에게 권한위임 (별표 3)
- 차. 미관지구(중심지, 일반)내 소규모 의원급 정신병원 건축 허용
(안 제54조 제1항)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를 “허가권자가 공익상 필요하다고”로 한다.

제31조제2호 및 제32조제2호 중 “(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을 “[박물관·미술관·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한다]”로 각각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같은 호 다목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외의 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있으며 거리의 산정은 주거지역 경계선으로부터 대지의 경계선까지로 하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 나. 위험물 제조소·저장소
 - 다.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 라.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 마. 고압가스 판매소
 - 바. 도료류 판매소
 - 사. 도시가스 제조시설
 - 아. 화약류 저장소
 -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가. 검사장
 - 나. 매매장(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
 - 다. 정비공장
 -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가.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나. 동물원·식물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관망탑

나. 휴게소

다.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같은 표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과 동일대지 또는 종합병원과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중심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8 제1호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같은 호 나목의 공동주택 중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80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하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과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지구는 90퍼센트 미만인 것. 이 경우 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건축할 수 있으며, 같은 호 다목의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라목의 위락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외의 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있으며 거리의 산정은 주거지역 경계선으로부터 대지의 경계선까지로 하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중심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8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 나. 위험물 제조소·저장소
 - 다.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 라.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 마. 고압가스 판매소
 - 바. 도료류 판매소
 - 사. 도시가스 제조시설
 - 아. 화약류 저장소
 -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같은 호 라목의 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과 동일대지 또는 종합병원과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일반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9 제1호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같은 호 가목의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나목의 위락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외의 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있으며 거리의 산정은 주거지역 경계선으로부터 대지의 경계선까지로 하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일반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공동주택 중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80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하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과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지구는 90퍼센트 미만인 것. 이 경우 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 나. 위험물 제조소·저장소
 - 다.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 라.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 마. 고압가스 판매소
 - 바. 도료류 판매소
 - 사. 도시가스 제조시설
 - 아. 화약류 저장소
 -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가. 작물 재배사
 - 나. 종묘배양시설
 - 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라.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 마. 동물원·식물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가. 교정시설
 -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근린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0 제1호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같은 호 나목의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다목의 위락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외의 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있으며 거리의 산정은 주거지역 경계선으로부터 대지의 경계선까지로 하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근린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0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공동주택 중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80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하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과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지구는 90퍼센트 미만인 것. 이 경우 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 나. 위험물 제조소·저장소
 - 다.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 라.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 마. 고압가스 판매소
 - 바. 도료류 판매소
 - 사. 도시가스 제조시설
 - 아. 화약류 저장소

-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가. 작물 재배사
 - 나. 종묘배양시설
 - 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라.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 마. 동물원·식물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유통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1 제1호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같은 호 라목의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마목의 위락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외의 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있으며 거리의 산정은 주거지역 경계선으로부터 대지의 경계선까지로 하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유통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고시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 나. 위험물 제조소·저장소
 - 다.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 라.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 마. 고압가스 판매소
- 바. 도료류 판매소
- 사. 도시가스 제조시설
- 아. 화약류 저장소
-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가. 교정시설
 -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준공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4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만, 연립 및 다세대주택(군수·구청장이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아파트{기존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기존 아파트의 재건축시 일단의 단지를 형성하는 것이 토지이용상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인접한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을 포함하는 경우(해당 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일단의 단지로 구획할 수 있는 기존 연립·다세대·단독주택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계획구역 안에 공장부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기존 공장부지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다만,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과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동화 실천계획이 승인된 사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을 위주로 판매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20 제1호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 경우, 같은 호 다목부터 라목까지 및 사목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를 말하며, 별표 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이라 함은 지구면적 10,000제곱미터당 주택의 호수를 말한다)

②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20 제2호 다목의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과 라목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제과점, 카목의 숙박시설의 경우 군수·구청장이 자연경관 및 주거환경, 역사·문화자원 등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설치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군수·구청장은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4조제1항제1호라목 중 “정신병원”을 “정신병원(입원환자실이 없는 소규모 의원급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0호 중 “식품공장”을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식품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0호 “유통상업지역 : 60퍼센트”를 “유통상업지역: 70퍼센트”로 한다.

제6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취락지구: 50퍼센트(다만,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의 경우는 60퍼센트)

제64조제4항제1호 중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을 “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로 한다.

제64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5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영 제85조제5항에”를 “영 제85조제6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영 제85조제7항”을 “영 제85조제8항”으로 한다.

제65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8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용적률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시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5개를 초과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국가의 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3개를 초과하여 중복위촉할 수 없다. 다만, 시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다른 법률 등의 규정에 의거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중복위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처리는 안건 상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재심의 안건을 포함한다)에 하여야 하며, 반복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시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별표 3의 사무명란의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무	법 제56조 내지 제65조 영 제51조 내지 제61조
-------------------	----------------------------------

별표 3의 사무명란의 제10호란 다음에 제10의2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관한 사무 (시장이 수립하는 경우는 제외)	법 제58조 영 제56조의2부터 영 제56조의4까지
---	------------------------------------

별표 3의 사무명란의 제15호, 제16호,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토지출입 등에 관한 사무(위임된것에 한함)	법 제130조
16. 법률 등 위반자에 대한 감독·처분에 관한 사무 (위임된것에 한함)	법 제133·136·137조
17. 과태료 등에 관한 사무(위임된것에 한함)	법 제144조, 영 제134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3조, 제49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6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7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를 개최할 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②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의 허가를 할 수 있다.		③ ----- 허가권자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생략)	건축	제31조(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현행과 같음)		건축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 (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 ----- [박물관·미술관·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한다] ----- -----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제32조(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생략)	건축	제32조(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현행과 같음)		건축
1. (생략)		(현행과 같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 (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 ----- (박물관·미술관·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 ----- -----		

현행	개정안
<p>3. ~ 5. (생략)</p> <p>제36조(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준주거지역안에서는 영별표 7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별표 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p> <p>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p> <p>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p> <p>3. (삭제 2009.1.12)</p> <p>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p> <p>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p> <p>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하는 것</p> <p>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p> <p>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p>	<p>-----</p> <p>3. ~ 5. (현행과 같음)</p> <p>제36조(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영별표 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같은 호 다목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외의 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있으며 거리의 산정은 주거지역 경계선으로부터 대지의 경계선까지로 하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②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영별표 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p> <p>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p> <p>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p> <p>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p> <p>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p> <p>나. 위험물 제조소·저장소</p> <p>다.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p> <p>라.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p> <p>마. 고압가스 판매소</p> <p>바. 도료류 판매소</p>

현행	개정안
<p>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p> <p>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p> <p>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p> <p>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p> <p>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나.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다. 위험물취급소 라.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p> <p>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운전학원·정비학원 라. 매매장(너비 12미터 이상인 도</p>	<p>사. 도시가스 제조시설 아. 화약류 저장소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p> <p>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검사장 나. 매매장(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 다. 정비공장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p> <p>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나. 동물원·식물원</p> <p>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p> <p>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관망탑 나. 휴게소</p>

현행	개정안
<p>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p> <p>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p> <p>가. 버섯재배사</p> <p>나. 종묘배양시설</p> <p>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p> <p>라. 식물과 관련된 가목 내지 다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p> <p>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라목의 국방·군사시설은 제외)</p> <p>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p> <p>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p> <p>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p> <p>가. 야외음악당</p> <p>나. 야외극장</p> <p>다. 어린이회관</p> <p>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과 동일대지 또는 종합병원과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p> <p>제37조(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중심상업지역안에서</p>	<p>다.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p> <p>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같은 표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과 동일대지 또는 종합병원과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제37조(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중심상업지역 안에서</p>

현행	개정안
<p>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영 별표 8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로 하되, 같은 호 아목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과 자목의 위락시설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안에서는 건축을 할 수 없으며, 거리의 산정은 주거지역 경계선으로부터 대지의 경계선까지로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② 중심상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8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가 복합된 것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이 	<p>는 영 별표 8 제1호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같은 호 나목의 공동주택 중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80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하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과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지구는 90퍼센트 미만인 것. 이 경우 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건축할 수 있으며, 같은 호 다목의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라목의 위락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외의 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있으며 거리의 산정은 주거지역 경계선으로부터 대지의 경계선까지로 하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② 중심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8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현행	개정안
<p>하인 것으로 하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과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지구는 90퍼센트 미만인 것)</p> <p>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p> <p>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p> <p>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p> <p>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p> <p>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p> <p>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p> <p>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p> <p>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p>	<p>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p> <p>나. 위험물 제조소·저장소</p> <p>다.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p> <p>라.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p> <p>마. 고압가스 판매소</p> <p>바. 도료류 판매소</p> <p>사. 도시가스 제조시설</p> <p>아. 화약류 저장소</p> <p>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p> <p>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같은 호 라목의 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p> <p>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p> <p>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과 동일대지 또는 종합병원과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현행	개정안
<p><u>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u></p> <p><u>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u></p> <p><u>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u></p> <p><u>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u></p> <p><u>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u></p> <p><u>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u></p> <p><u>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u></p> <p><u>나.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u></p> <p><u>다. 위험물취급소</u></p> <p><u>라.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u></p> <p><u>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u></p> <p><u>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u></p>	

현행	개정안
<p>의 장례식장(「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과 동일대지 또는 종합병원과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p> <p>제38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영 별표 9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로 하며, 같은 호 가목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이하인 것(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과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지구는 90퍼센트 미만인 것)에 한하고, 같은 호 차목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과 카목의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다.</p> <p>② 일반상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p>제38조(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일반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9 제1호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같은 호 가목의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나목의 위락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외의 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있으며 거리의 산정은 주거지역 경계선으로부터 대지의 경계선까지로 하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② 일반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공동주택 중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80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하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과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 지구는 90퍼센트 미만인 것. 이 경우 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p>

현행	개정안
<p>의 운동시설</p> <p>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p> <p>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p> <p>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p> <p>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p> <p>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p> <p>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p> <p>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p>	<p>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건축할 수 있다.]</p> <p>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p> <p>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p> <p>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p> <p>나. 위험물 제조소·저장소</p> <p>다.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p> <p>라.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p> <p>마. 고압가스 판매소</p> <p>바. 도료류 판매소</p> <p>사. 도시가스 제조시설</p> <p>아. 화약류 저장소</p> <p>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p> <p>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p> <p>가. 작물 재배사</p> <p>나. 종묘배양시설</p> <p>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p> <p>라.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p> <p>마. 동물원·식물원</p> <p>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p> <p>가. 교정시설</p>

현행	개정안
<p>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p> <p>나.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p> <p>다. 위험물취급소</p> <p>라.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p> <p>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p> <p>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p>	<p>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p> <p>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p>
<p>제39조(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영 별표 10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이하인 것(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과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지구(90퍼센트 미만인 것)에 한하고, 같은 호 파목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다.</p> <p>② 근린상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0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p> <p>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p>	<p>제39조(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근린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0 제1호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같은 호 나목의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다목의 위락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외의 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있으며 거리의 산정은 주거지역 경계선으로부터 대지의 경계선까지로 하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② 근린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0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공동주택 중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공동주택 부분의 면</p>

현행	개정안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적이 연면적 합계의 80퍼센트 이하인 것으로 하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과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지구는 90퍼센트 미만인 것. 이 경우 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건축할 수 있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안에서는 제37조제1항에 따른다.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나. 위험물 제조소·저장소 다.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라.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마. 고압가스 판매소 바. 도료류 판매소 사. 도시가스 제조시설 아. 화약류 저장소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작물 재배사 나. 종묘배양시설 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현행	개정안
<p>제외한다.</p> <p>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p> <p>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p> <p>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p> <p>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p> <p>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p> <p>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p> <p>나.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p> <p>다. 위험물취급소</p> <p>라.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p> <p>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p> <p>가. 주차장</p> <p>나. 세차장</p> <p>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p>	<p>라.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p> <p>마. 동물원·식물원</p> <p>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p> <p>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p>

현행	개정안
<p>「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차장</p> <p>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라목의 국방·군사시설은 제외)</p> <p>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p> <p>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p> <p>제40조(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유통상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1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p> <p>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p> <p>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p> <p>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p> <p>4. (삭제 2009.1.12)</p> <p>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p> <p>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p> <p>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p> <p>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p> <p>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에 한정한다)</p>	<p>제40조(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유통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1 제1호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같은 호 라목의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마목의 위락시설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외의 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있으며 거리의 산정은 주거지역 경계선으로부터 대지의 경계선까지로 하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② 유통상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p> <p>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p> <p>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고시원</p> <p>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p>

현행	개정안
<p>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안에서는 제37조제1항에 따른다.</p>	<p>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p>
<p>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나.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다. 위험물취급소 라.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p>	<p>나. 위험물 제조소·저장소 다.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라.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마. 고압가스 판매소 바. 도료류 판매소 사. 도시가스 제조시설 아. 화약류 저장소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p>
<p>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p>	<p>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p>
<p>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라목의 국방·군사시설시설</p>	<p>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정시설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p>
<p>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p>	<p>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p>
<p>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p>	<p>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p>
<p>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p>	
<p>제43조(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준공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4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p>	<p>제43조(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① 준공업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4 제1호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p>
<p>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p>	<p>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p>

현행	개정안
<p>단독주택</p> <p>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p> <p>가. 연립 및 다세대주택(군수·구청장이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p> <p>나. 아파트</p> <p>1) 기존 아파트의 재건축</p> <p>2) 기존 아파트의 재건축시 일단의 단지를 형성하는 것이 토지이용상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인접한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을 포함하는 경우(해당 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3) 일단의 단지로 구획할 수 있는 기존 연립·다세대·단독주택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계획구역 안에 공장부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기존 공장부지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p> <p>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p> <p>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p> <p>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영 별표14 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p>	<p>공동주택[다만, 연립 및 다세대주택(군수·구청장이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아파트{기존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기존 아파트의 재건축시 일단의 단지를 형성하는 것이 토지이용상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인접한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을 포함하는 경우(해당 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일단의 단지로 구획할 수 있는 기존 연립·다세대·단독주택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계획구역 안에 공장부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기존 공장부지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제외한다.]</p> <p>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p> <p>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다만,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과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동화 실천계획이 승인된 사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을 위주로 판매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p>

현행	개정안
<p>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다만, 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동화 실천계획이 승인된 사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을 위주로 판매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p> <p>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p> <p>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p> <p>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p> <p>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p> <p>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p> <p>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p>	<p>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p> <p>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p>
<p>제49조(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20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0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다만,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시행규칙 제12조 별표에서 정한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하며, 이 경우 별표 제2호에서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이란 지구면적 10,000제곱미터당 주택의 호수를 말한</p>	<p>제49조(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20 제1호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 경우, 같은 호 다목부터 라목까지 및 사목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를 말하며, 별표 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이라 함은 지구면적 10,000제곱미터당 주택의 호수를 말한다)</p>

현행	개정안
<p>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1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현행	개정안
<p><u>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u></p> <p>가. 영 별표 19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p> <p>나.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p> <p>다.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p> <p>라.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p> <p>마. 섬유제조시설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p> <p>12. (삭 제 2009. 1. 12)</p> <p>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같은 호 가목의 창고</p>	

현행	개정안
<p>중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p> <p>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p> <p>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p> <p>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p> <p>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p> <p>② 군수·구청장은 자연경관 및 주거환경, 역사·문화자원 등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구청장은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p> <p>제54조(건축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p> <p>1. 중심지미관지구 가. ~ 다. (생략)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u>정신병원·격리병원</u></p>	<p>②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20 제2호 다목의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과 라목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제과점, 카목의 숙박시설의 경우 군수·구청장이 자연경관 및 주거환경, 역사·문화자원 등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설치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군수·구청장은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p> <p>제54조(건축제한) ① ----- ----- -----</p> <p>1.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 <u>정신병원(입원환자실이 없는 소규모 의원급 시설은</u></p>

현행	개정안
<p>마. ~ 거. (생략)</p> <p>2. ~ 3. (생략)</p> <p>② ~ ③ (생략)</p> <p>제60조(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등) ①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영 별표 23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3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p> <p>1. ~ 9. (생략)</p> <p>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u>식품공장</u>으로서 영 별표 19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p> <p>11. ~ 12. (생략)</p> <p>② ~ ③ (생략)</p> <p>제6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p> <p>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p> <p>1. ~ 9. (생략)</p> <p>10. <u>유통상업지역: 60퍼센트</u></p> <p>11. ~ 21. (생략)</p> <p>②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p> <p>1. <u>취락지구: 50퍼센트</u></p>	<p><u>제외한다</u>) -----</p> <p>마. ~ 거. (현행과 같음)</p> <p>2. ~ 3.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60조(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등) ① -----</p> <p>-----</p> <p>-----</p> <p>1. ~ 9. (현행과 같음)</p> <p>10. -----</p> <p>----- <u>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u> -----</p> <p>-----</p> <p>11. ~ 12.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6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p> <p>① -----</p> <p>-----</p> <p>1. ~ 9. (현행과 같음)</p> <p>10. <u>유통상업지역: 70퍼센트</u></p> <p>11. ~ 21.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1. <u>취락지구: 50퍼센트(다만, 육지와</u></p>

현행	개정안
<p>2. ~ 6. (생략)</p> <p>③ (생략)</p> <p>④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p> <p>1. 해당 건축물의 <u>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u> : 80퍼센트</p> <p>2.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u>가로</u>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90퍼센트</p> <p>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p> <p>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p> <p>⑤ (생략)</p> <p>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u>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u></p>	<p><u>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의 경우는 60퍼센트)</u></p> <p>2. ~ 6.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p> <p>1. ----- <u>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u> -----</p> <p>2. <u>삭제</u></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 <u>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u> ----- -----</p>

현행	개정안
<p>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율)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 이내 ⑦ ~ ⑨ (생략) <신설></p> <p>제68조(구성) ① ~ ⑤ (생략) <신설></p> <p>제71조(회의 운영) ① ~ ③ (생략) <신설></p>	<p>----- -----</p> <p>⑦ ~ ⑨ (현행과 같음)</p> <p>①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8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에 따라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용적률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p> <p>제68조(구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시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5개를 초과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국가의 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3개를 초과하여 중복위촉할 수 없다. 다만, 시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다른 법률 등의 규정에 의거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중복위촉으로 보지 아니한다.</p> <p>제71조(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처리는 안건 상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재심의 안건을 포함한다)에 하여야 하며, 반복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시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처리할 수 있다</p>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관계법령	<p>□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 2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 (준공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3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별표 2]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71조제1항제1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 자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71조제1항제2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7] [시행일:2014.7.15] 도시·군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도축장·도계장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제1호아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8] [시행일:2014.7.15] 도시·군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7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 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저장소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9] [시행일:2014.7.15] 도시·군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8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 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제1호라 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라목 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제1호바목 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 은 제외한다)

[별표 10] [시행일:2014.7.15] 도시·군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9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 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 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 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 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 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 · 저장소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1] [시행일:2014.7.15] 도시·군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0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 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은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4] [시행일:2014.7.15] 도시·군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3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20] [시행일:2014.7.15] 도시·군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71조제1항제19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
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
치하는 것과 단란주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
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
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
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은 제외한다)

(1) 별표 19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출판시설
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
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않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제외
한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한 층수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안마시술소 및 같은 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 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창고 중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23] [시행일:2014.7.15] 도시·군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2호 자목(1) 내지(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참고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 없음”

3. 미첨부 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조례로서 정하는 것이므로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장 김근수